

#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류 예 리\*

## 차 례

- I. 서 론
- II. 베트남의 ABS 법체계
- III.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 IV. 평가 및 시사점
- V. 결 론

## [국문초록]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유전자원 이용 시에는 해당국가의 유전자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향후 중국 유전자원의 대체지역으로 중요한 만큼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가 2017년 5월 12일에 공포한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은 외국인의 베트남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1% 이상의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유전자원 접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총 28개의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다시 9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베트남이 2008년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한 만큼 「생물다양성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근거로 입법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박사.

## I. 서론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베트남은<sup>1)</sup> 2017년 5월 12일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이하, ‘시행령’)<sup>2)</sup>을 제정하였다. 시행령은 총 28개의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다시 9개의 서식(samp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식에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license)을 요구하는 개인을 위한 과학기술기관의 확인서,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유전자원 이익 공유 계약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갱신 요청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갱신 결정,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철회 결정, 연구·조사 등 비상업 목적 유전자원 해외이전요청서, 연구·조사 등 비상업 목적의 유전자원 해외이전허가 결정이 포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후,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102개로 늘어났고<sup>3)</sup>, 이들 당사국들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가운데<sup>4)</sup>,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해외유전자원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외유전자원 의존도는 약 60%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약 5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그런데 최근 중국이 공개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sup>6)</sup>에 따르면, 중국의 유전

1) UNCTAD, The Interface between access and benefit-sharing rules and bio-trade in Vietnam, 2016.11.28., pp. 3-4, available at homepage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tcted2016d9\\_en.pdf](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tcted2016d9_en.pdf)

2)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법령(영문) 전문은 [https://gallery.mailchimp.com/fa03cd8ada851a2047d59e055/files/ef8be141-4e84-4200-8fb4-6e2bd640b4f7/Vietnam\\_ABS\\_decree\\_English\\_Jun\\_03\\_clean\\_002\\_.pdf](https://gallery.mailchimp.com/fa03cd8ada851a2047d59e055/files/ef8be141-4e84-4200-8fb4-6e2bd640b4f7/Vietnam_ABS_decree_English_Jun_03_clean_002_.pdf)에서 참고.

3)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default.shtml> (검색일:2017.10.15)

4)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pp. 106-108.

5)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Trade Brief, No 23, 2017.7.28., p. 6.

6) 중국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법령 초안 및 초안설명서 전문은 [http://sts.mep.gov.cn/swdyx\\_1/swdyxxz/201703/t20170323\\_408704.shtml](http://sts.mep.gov.cn/swdyx_1/swdyxxz/201703/t20170323_408704.shtml)에서 참고.

7) 류예리,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7, pp. 231-260.

자원 이용에 대한 대가가 크고, 향후 법안이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유전자원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전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체 국가(지역)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유전자원의 대체지역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베트남이 2008년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한 만큼 「생물다양성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II). 다음으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III), 그 내용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한 후(IV),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V).

## II. 베트남의 ABS 법체계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는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이하 ‘ABSCH’)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ABSCH에 공개된 베트남의 입법적 조치는 「생물다양성법」 제5장 제1부분과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sup>8)</sup> 따라서 베트남의 ABS 법체계는 「생물다양성법」 제5장 제1부분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된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생물다양성법」의 주요 내용

8)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 <https://absch.cbd.int/countries/VN>(검색일: 2017.10.13)

「생물다양성법」 제5장 제1부분은 제55조-제61조까지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에서는 국가가 베트남 영토에 있는 모든 유전자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분야별로 유전자원을 관리할 조직과 개인을 배정하고 있다.

즉, 보존지역을 관리하도록 배정받은 보존지역 관리단체(conservation area management units and organizations)는 보존지역에서의 유전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보존시설의 장(Head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facilities), 과학연구기술개발연구소(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titutions)와 유전자원저장보존시설(genetic resource storage and preservation establishments)은 그들 자신의 유전자원을 관리하여야 하고, 육지·숲 또는 해수면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도록 배정받은 조직, 가정과 개인은 그들에게 배정된 유전자원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역인민위원회(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sup>9)</sup>는 현지의 유전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로부터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배정받은 조직, 가정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권리(rights)에는 해당 유전자원을 조사·수집할 수 있고,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해당 유전자원을 교환·양도 및 공급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법」 제58조와 제61조에 따른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조직, 가정 및 개인에 의해 공유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의무(obligations)에는 첫째, 국가책임기관에 연구·개발 및 상업적 상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다른 조직 또는 기관에 유전자원을 교환, 양도 또는 공급에 대해서 통지해야 한다. 둘째, 이법 제59조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은 조직 또는 개인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은 조직과 개인에 의한 유전자원의 조사·수집을 통제해야 하며, 넷째, 유전자원 관리를 위하여 법과 국가책임기관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sup>9)</sup>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1급, 2급, 3급 도시로 구분된다. 58개의 성과 5개의 직할시는 1급 도시이며, 성은 다시 시(town)와 지구(rural districts)로 나누어지는 2급 도시이다. 지구는 면급(Townships)과 Communes)으로 구분되는 3급 도시에 속한다. 인민위원회는 이런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크게 성급, 현급, 면급으로 구분된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의 숫자는 9명에서 11명까지이며, 현급 인민위원 숫자는 7명에서 9명, 면급 인민위원의 숫자는 3명에서 5명이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전자원 접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57조는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접근을 등록(registering)하고, 이법 제58조와 제61조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을 작성한 후, 제59조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신청하도록(apply) 하고 있다. 제58조에 따르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은 접근된 유전자원이 위치한 지역인민위원회가 승인해주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에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 접근될 유전자원 및 수집될 유전자원의 양, 유전자원 접근 장소, 유전자원 접근 계획, 유전자원의 조사 및 수집의 결과에 대한 제3자 양도, 조사 및 개발 활동 또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업적 상품 생산, 조사 및 개발 활동 또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업적 상품 생산에의 참여, 조사 및 개발 활동 또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업적 상품을 생산하는 수행 장소, 유전자원 접근에 기초하여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을 포함하여 국가 및 관련 당사자와의 이익 공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는 유전자원 소재 지역인민위원회와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해준 국가책임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59조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책임기관에 등록, 서명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를 갖추어야 하며, 제59조 제4항 상의 접근이 금지되는 유전자원이 아니어야 한다.<sup>10)</sup>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청서류에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청서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하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청서에는 유전자원 이용 목적, 접근될 유전자원 및 수집될 유전자원의 양, 유전자원 접근 장소, 수행될(to-be-carried out) 유전자원 관련 활동, 접근될 유전자원 관련 조사 및 활동 또는 상업 상품의 생산 결과에 대한 정기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해주는 국가책임기관은 유전자원 관리를 배정받은 조직,

10) 「생물다양성법」 제59조 제4항 a) Genetic resources of species are on the list of endangered rare and precious species prioritized for protection, except cases licensed by competent state agencies; b)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threatens to harm humans, the environment, security, defense or national interests.

가정 또는 개인의 승인 없이도 허가증을 허가해줄 수 있다.

제60조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은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은 조직과 개인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에 적시된 유전자원을 조사 및 수집하고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법률상 수출이 금지된 유전자원을 제외한 유전자원에 대해서 베트남 영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접근이 허락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상품을 교역할 수 있고, 허가증과 이익 공유 계약서상의 기타 권리도 갖는다.

반면 의무에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상의 규정 준수, 허가증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조사 및 연구 또는 상업적 상품의 생산 결과에 대해 허가증을 허가해준 국가책임 기관에 보고서 제출, 유전자원 접근에 기초하여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을 포함하여 국가 및 관련 당사자와의 이익 공유 및 그 밖에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및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에 적시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1조에서는 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국가와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배정받은 조직, 가정 및 개인과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접근이 허락된 조직 및 개인과 허가증에서 규정된 관련 당사자와도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취득된 이익은 유전자원 접근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공유되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

## 2. 평가 및 시사점

「생물다양성법」 제5장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를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접근을 등록하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을 작성한 후,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은 접근된 유전자원이 위치한 지역인민위원회가 승인해주어야 한다. 「생물다양성법」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에 대한 원칙사항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의 특징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서는 지역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법에서는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에 근거하면 국가책임기관에서는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따라서 접근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민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역인민위원회가 국가책임기관과는 별도로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합리성 여부를 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분쟁 또는 불만은 베트남 국내법 및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베트남의 어떤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어떤 기관에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베트남 국내 유전자원 관련 분쟁은 베트남 국내법 또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조약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은 당사국이지만 베트남 유전자원을 이용한 국가가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법」 제3조상 용어정의는 시행령에는 없지만 상위법인 「생물다양성법」의 정의가 시행령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개념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유전자원(Genetic resource)이란 자연, 보호구역, 생물다양성보존시설, 과학연구기술 개발연구소에서의 모든 종 및 유전물질을 포함한다.<sup>12)</sup>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of genetic resources)이란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원주민(native people)의 지식, 경험 및 독창력을 의미한다.<sup>13)</sup>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이란 연구 개발 및 상업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up>14)</sup>

11) 「생물다양성법」 제58조 제5항.

12) 「생물다양성법」 제3조 22. Genetic resource includes all species and genetic specimens in nature, conservation areas, biodiversity conservation facilities and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in nature.

13) 「생물다양성법」 제3조 28. Traditional knowledge of genetic resources means knowledge, experience and initiatives of native people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14) 「생물다양성법」 제3조 29. Access to genetic resources means activities of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genetic resourc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mmercial products.

### Ⅲ.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 1. 적용범위와 규제 대상

시행령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시행령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권 하에서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에 관한 활동의 관리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이 조항에 따르면, 장소적으로는 베트남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유전자원에 한정함으로써 국가이원지역이나 공해 등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유전자원은 주권사항이며,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 제3조에 부합한다.

시행령은 규제대상에 대해서도 “이 시행령은 상업 상품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조직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즉, 시행령은 상업 상품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이용 목적을 갖고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非)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로 접근할 경우에는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sup>17)</sup>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도 있으므로 비상업적 연구에도 이 시행령은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행령은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이란 “시행령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시행령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sup>18)</sup> 즉, 유전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구성요소나 생화학적 구성요소를 연구하고 개발

15) 시행령 제1조.

16) 시행령 제2조.

17) 시행령은 제2조에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가책임 기관이 발급한 문서로서 접근자가 비(非)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상업적 상품 개발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행동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의미함.

18) 시행령 제3조.

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응용하거나 상업화하는 경우에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의 개념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적용범위는 비록 파생물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게 없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이용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에 부합하고 있다.

## 2. 새로운 정의 조항 추가

### (1) 인적 적용 대상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못하여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sup>19)</sup> 반면에 시행령은 인적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공자, 접근자, 제3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공자(Provider)란 “「생물다양성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배정받은 개인 그리고/또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국가가 개인과 조직에게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유전자원 접근자와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접근자(Accessor)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권 하에서 유전자원 이용을 위하여 접근 활동하는 개인 그리고/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용자(user)란 용어 대신 이용할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가리키는 접근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접근자란 용어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자(Third party)란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접근자로부터 양도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접근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가리킨다. 특이한 점은 제공자와 접근자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파생물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19)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p. 137.

제3자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처음으로 파생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

## (2) 국제이행준수인증서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e)는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당사국에게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상용 문서의 발급하고,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이하 ‘ABSCH’)에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유전자원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이행준수인증서(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benefits, 이하 ‘IRCC’)란 “국가책임기관이 ABSCH에 통보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및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를 위한 계약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전자문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sup>20)</sup>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의내린 IRCC는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e)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의한 것이지 별도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e)는 “제1항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용 문서의 발급과 이의 접근 및 그 상용 문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license to access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문서로서 접근자가 비(非)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 상업 상품 개발 목적을

<sup>20)</sup> 시행령의 IRCC에 대한 개념은 COP-MOP 2의 합의사항을 따른 것임. CBD/NP/MOP/DEC/2/2

위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행동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 개념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은 시행령에 부속서의 형태로 첨부된 서식 4(sample form 4)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식 4는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해주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는 주체에 관한 정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정보,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받는 주체인 조직 및 개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4)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계약서

나고야의정서 제5조는 “협약 제15조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유전자원의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익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계약서(contract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란 “이용의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대하여 제공자와 접근자 간의 약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5) 유전자원의 원산지

협약은 유전자원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은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sup>21)</sup> 여기에서 현지 내 상태(in-situ conditions)란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sup>22)</sup> 사육

<sup>21)</sup> 협약 2조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means the country which possesses those genetic resources in-situ conditions.

종 또는 배양종(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sup>23)</sup>

시행령에서는 유전자원의 원산지(origin of genetic resources)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원산지란 야생 유전자원이 수집되거나 유전자원이 오랜 기간 사육되어온 소재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시행령에서의 유전자원 원산지 개념은 협약상의 유전자원 원산국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사육된 유전자원은 자연서식처가 아닌 현지 외 유전자원을 의미하므로 협약과 불일치한다.

### 3.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의 허가, 갱신, 철회

#### (1) 국가책임기관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는 농업작물(agricultural crop varieties), 가축(livestock), 어류(aquatic species), 종묘(forest seedling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증을 허가, 갱신 및 철회한다. 농업작물, 가축, 어류, 종묘 유전자원 이외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증은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에서 허가, 갱신 및 철회한다.<sup>24)</sup>

#### (2)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고 및 신청의 주체

시행령에 따르면, a) 상업 목적 또는 상업상의 개발을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을 희망하는 베트남 개인과 기관, b) 목적을 불문하고, 베트남 영역 내에서 유전자원에 접근을 희망하는 외국 개인과 기관, c) 이 시행령 제20조<sup>25)</sup>에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2) 협약 2조 “in-situ conditions” means conditions where genetic resources exists within ecosystems and the maintenance and recovery of viable population of species 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and, in the case of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in the surroundings where they have developed their distinctive properties.

23) 협약 2조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means species in which the evolutionary process has

24) 시행령 제6조.

25) 시행령 제20조.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하려고 하는 베트남 개인과 기관이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sup>26)</sup>

이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개인(individuals)은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 관련 분야의 대학원 학위(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둘째,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 분야에서 설립된 기관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기관의 회원이며, 시행령 부속서의 서식(sample form 1)에 따라 서면으로 그 기관이 보장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 (3)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등록과 신청의 요건 및 절차

#### 1) 유전자원 접근 등록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허가증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원 접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과 기관은 등록서류(registration documents)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국가책임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에는 a) 유전자원 접근 등록 신청서(sample form 2), b) 기관이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법적 지위를 적시하는 서류, c) 유전자원에 접근을 등록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베트남 과학기술기관과의 협력 합의서, d) 많은 기관과 개인의 참여를 포함하는 협력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할 기관 또는 개인을 대표할 서면 허가(written authorization(s))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등록서류 접수 후 근무일 10일 내에 신청자에 신고 확인 또는 거절하는 서면 통보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2) 제공자와의 계약 협상 및 서명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등록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제공자와 계약을 협의하고 서명하여야 한다.<sup>27)</sup> 이때 계약서의 내용은 시행령 제15조에 반드시 포함

26) 시행령 제7조.

27) 시행령 제10조.

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을 공급하거나 접근하는데 협력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1인 이상인 경우, 이들 개인과 기관들은 반드시 공동으로(jointly) 계약서를 협의하고 서명한다.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계약서는 시행령 부속서 서식(sample form 3)에 기술된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계약서는 국가책임기관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데 허가증을 허가한 후에만 유효하다.<sup>28)</sup> 유전자원 허가증이 만료할 경우, 접근자는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없지만, 계약서의 이익 공유 규정은 효력이 남아있다. 유전자원 허가증이 거절될 경우, 계약서의 이행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부합해야 한다.

### 3) 지역인민위원회에 계약 승인 요청

유전자원이 접근되는 지역 또는 제공자의 주소가 등록된 지역이 위치한 지역인민위원회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승인하여야 한다.<sup>29)</sup> 지역인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에는 a)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신고 동의서 복사본, b)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c) 현재 유효한 원본 여권, identity card, citizen identification 또는 책임 당국 이 발급한 사진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서류들이다. 계약서는 접수 후 근무인 최대 3일 내에 인증되어야 한다.

### 4)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청

신청자는 국가책임기관에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요청하는 신청서류(application dossier)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식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sup>30)</sup>

신청서류에는 a)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등록 승인서 복사본, b) 지역인민위원회의 승인(certification)이 있는 공급자와 접근자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계약서, c) 유전자원이 접근 및 이용에 제한된 유전자원 목록에 있을 경우, 관련 부서(the sectorial management Ministries and agencies)의 서면 승인이 요구되며, d) 그 신청자가 개인

28) 시행령 제15조.

29) 시행령 제11조.

30) 시행령 제12조.

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가 요구된다.

신청자는 유전자원 접근 신고 동의서 발급 12개월 내에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신청서류는 무효한 것으로 본다.

#### 5) 추가 자료

이외에도 신청자는 정보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신청하는 서류를 평가하는 동안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으로 서류업무를 종결한다.<sup>31)</sup>

#### (4)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평가 및 허가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국가책임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즉, 신청서가 유효하고, 신청서를 보완할 보충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서류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거절하는 내용이다. 신청 서류를 보충하고 완결하는 기한은 서류의 보완과 완성을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다.<sup>32)</sup>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에 대한 평가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에 따라 평가 주체와 기간이 다르다.<sup>33)</sup> 유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책임기관은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국가책임기관은 상업적 연구 또는 상업적 상품 개발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위한 신청 서류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Appraisal Committee)를 설치한다.

이 평가위원회에는 농업농촌개발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와 다른 부처의 대표자들, 유전자원 접근이 발생하고자 하는 성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제하며, 평가업무를 담당할 상임하부기관(standing subordinate

31) 시행령 제8조 제5항.

32) 시행령 제13조 제1항.

33) 시행령 제13조 제2항.

units)로서의 기관을 임명하고, 이들 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평가할 내용은 a) 「생물다양성법」 제59조에 규정된 내용과의 합치 여부, b) 신청 서류상 기재된 정보의 완결성 및 명확성, c) 현 규정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계약 내용의 관련성, d) 생물다양성,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접근 활동의 충격 평가, e)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과 개인의 역량이 다.<sup>34)</sup>

평가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 여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거절의 경우 국가책임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절을 통보하여야 하면 거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과 기관은 과징금 및 수수료에 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요청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에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sup>35)</sup>

### (5) 의도의 변경, 제3자 양도 및 지식재산권 등록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받은 개인과 기관은 신고한 목적으로만 유전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의 이용 의도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0조, 11조와 12조에 부합하여야 한다.<sup>36)</sup>

접근한 유전자원 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필요한 요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첫째, 개인 또는 기관이 허가증에 적시된 의도의 변경 없이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한 국가책임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둘째,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의 양도가 허가증에 적시된 의도의 변경과 관련 있을 경우,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접수하기 전에 제3자는 제공자와 계약서를 협상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 시행령의 제10조, 11조, 12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sup>37)</sup>

그리고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 양도가 발생할 경우, 허가증 상의 접근자의 의무 양도, 그리고 접근자와 제공자 간에 서명된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34) 시행령 제13조 제3항.

35) 시행령 제19조.

36) 시행령 제14조 제1항.

37)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공자에게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규정도 포함된다.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의 이용으로부터 독창적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은 접근된 유전자원의 출처(source or origin)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시행령의 제22조 제2항에 부합하여야 한다.<sup>38)</sup>

## (6)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의 갱신과 철회

### 1) 내용 및 기간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은 이 시행령 부속서 서식 4(sample form 4)에 규정되어 있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위한 신청서류에서의 유전자원 접근 목적 및 계획에 기초하여 국가책임기간이 결정하며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받은 개인과 기관은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유전자원이 수출에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원 목록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sup>39)</sup>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하고자 하는 베트남 학생, 박사학위 학생, 또는 과학기술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sup>40)</sup> 첫째, 연구의 일환으로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하고자 하는 베트남 학생 또는 박사학위 학생은 국가책임기관 사무실에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업 목적으로 조사, 분석 또는 평가를 위해 해외로 유전자원을 양도하고자하는 베트남 과학기술기관은 제6조상에 정의된 국가책임기관에 국가책임기관 사무실에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유전자원의 양도를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부속서 서식 9(sample form 9)에 적시된 사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거절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가책임기관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 2) 갱신

38) 시행령 제14조 제3항.

39) 시행령 제16조.

40) 시행령 제20조.

유전자원에 계속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접근인은 허가증이 만료되기 2개월 전, 국가 책임기관에게 허가증 연장을 위한 신청서(dossier for license renewal)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된다.<sup>41)</sup>

유전자원 허가증 갱신 서류에는 a) 시행령 부속서 서식 5(sample form 5)인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갱신 신청서, b) 허가받은 허가증과 당사자 간 서명된 계약서에 따라 허가증 갱신을 요구할 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 c)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복사본, d) 접근자와 공급자 간에 서명된 계약서 사본, e) 당사자 간에 유전자원의 접근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제공자의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다.

허가증 갱신을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내에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해주는 국가책임기관은 그 연장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한 결정은 부속서 서식 6(sample form 6)을 이용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의 연장된 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갱신 수수료(renewal fee)를 지불하여야 한다.

### 3) 철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은 국가책임기간이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발견할 경우 철회되어야 한다.<sup>42)</sup> 즉, 국가책임기관이 a) 개인, 조직이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b)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활동이 국민, 환경, 안전, 국가 방어 또는 국가이익에 해가 될 경우, c) 허가된 범위 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활동, d) 법에 따른 기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은 철회된다.

## 4.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

### (1) 이익의 유형

41) 시행령 제17조.

42) 시행령 제18조.

나고야의정서 부속서에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와 같이 시행령도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유형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43)</sup> 금전적 이익에는 수집 샘플별 접근 수수료, 로열티, 상업화하는 경우 라이선스비, 일괄지급 또는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 payment),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금전적 이익이 있다. 비금전적 이익에는 연구결과 공유, 연구 또는 생산 참여, 과학기술정보에의 접근, 기술이전, 직업교육, 공동지재권, 그리고 기타 비금전적 이익이 있다.

## (2) 금전적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성된 상품의 금전적 이익의 공유는 그 상품의 매년 총 수익의 1% 이상이어야 한다.<sup>44)</sup> 그러나 유전자원 또는 그 파생물의 양도로 취득된 경우, 또는 유전자원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제공자를 위한 금전적 이익 공유는 총 양도금액 또는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발생한 총소득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제공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5)</sup> 첫째, 공급자가 지역인민위원회, 보호지역의 관리위원회(Protected Area's Management Board), 유전자원저장보존정부시설(state-managed facilities for storing or preserving genetic resources), 생물다양성보존시설(biodiversity conservation facilities), 또는 정부가 위임한 연구기술개발연구소(institutes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igned by the State)인 경우, 공유된 금액의 30%는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유전자원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공유된 금액의 나머지 70%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국가예산처(the State Budget)에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공급자가 정부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가족 또는 조직일 경우, 공유된 이익의 50%는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공유된 금액의 50%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

43) 시행령 제21조.

44)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제2항.

45) 시행령 제22조 제3항.

도록 국가예산처에 지급하여야 한다.

### (3)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과 그러한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는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이며, 계약서에 적시될 것이다.<sup>46)</sup> 비금전적 이익의 수혜자는 국내 공급자, 외국 접근자의 국내 동업인 및 기타 관련 조직 및 개인이다. 접근된 유전자원의 출처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 공표 시 또는 그러한 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에 기초한 혁신적인 결과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청 시 명확히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 5. 정보 및 보고

### (1) 국제이행준수인증서 공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허가, 갱신 또는 철회를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천연자원환경부에 그러한 결정문 원본을 송부할 책임이 있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허가, 갱신 또는 철회를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천연자원환경부는 IRCC 정보 또는 취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ABSCH에 공개할 책임을 진다.<sup>47)</sup>

###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이행 보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상 규정된 주체(entities)는 국가책임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에 규정된 유전자원 접근 활동 보고서, 2년 마다 유전자원 이용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정기보고 및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른 비정기적 보고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제2항상 규정된 주체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3개월 내에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하도록 허가해준 국가책임기관에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up>48)</sup>

46)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3항.

47) 시행령 제24조.

## 6. 국가기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책임

천연자원환경부는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고, 유전자원,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개발하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전자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포털, 등록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sup>49)</sup>

농업농촌개발부는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천연자원환경부와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환할 책임이 있다.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 내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이행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약적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에 대표(representatives)를 지명하고, 평가활동을 위하여 의약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부처(Ministries), 장관급기관(ministerial-level agencies), 정부기관(Government agencies)은 권한과 의무 내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위한 신청 서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활동을 위하여, 만일 있다면(if any) 국가책임기관과 유전자원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환할 책임이 있다.

성인민위원회(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는 그들의 관리 지역 내에서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를 관리하고,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위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국가책임기관과 협력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 내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역인민위원회(The Communal People's Committees)는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 승인을 이행하고, 지역에서의(in the commune)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허가받은 조직과 개인의 관련 활동, 유전자원 접근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또는 계약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역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책임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

48) 시행령 제25조.

49) 시행령 제27조.

받은 조직과 개인의 관련 활동 및 유전자원 접근 현황에 대하여 서면요청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IV. 평가 및 시사점

### 1. 파생물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시행령은 적용범위 규정에서 파생물(derivatives)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이 시행령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파생물은 시행령의 본문과 부속서 서식에 등장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법」 정의규정에 언급되는 바, 비록 적용범위 규정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sup>50)</sup>

### 2. 유전자원 접근 등록 시 외국인의 추가 서류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 베트남 내국인과 조직은 이용 목적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접근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차이가 있다. 즉, 외국인에게만 더 요구되는 서류에는 유전자원에 접근을 등록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베트남 과학기술기관과의 협력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이용 및 반출하지 못하도록 베트남 기관의 협력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개인의 유전자원 접근 자격 요건

<sup>50)</sup> 시행령 제3조에서 파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3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도 파생물이 언급되고, 시행령 본문 제14조, 제22조에서 언급됨.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개인은 조직과는 달리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 관련 분야의 대학원 학위(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둘째,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 분야에서 설립된 기관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 기관의 회원이며, 시행령 부속서의 서식 1에 따라 서면으로 그 기관이 보장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조직이 아닌 개인이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등록하고 신청할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 4. 지역인민위원회 승인 절차

베트남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를 국가 책임기관에 제출하여야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 민위원회와 지역인민위원회의 지역 내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인민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민회의(people's council)에서 선출된 인민위원회(peoples's committee)는 인민회의의 집행기관으로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에 관한 의결을 집행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인민회의의 감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상급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회의의 의결을 관할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한다.<sup>51)</sup>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생물유전자원 또한 인민의 것으로서 지역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존재하는 생물유전자원이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유전자원이 존재하는 현지에서의 보호관리가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sup>51)</sup> <http://m.blog.daum.net/finego/14977849>

## 5. 출처공개 요건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의 이용으로부터 독창적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은 접근된 유전자원의 출처(source or origin)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sup>52)</sup> 베트남도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권 등록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파생물의 이용으로부터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등록 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베트남이 시행령 적용범위에 비록 파생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출처 공개에 파생물까지도 포함시킴으로서 적용범위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동 조항을 통하여 베트남은 이익 공유 대상에 파생물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 6. 이익 공유 금액

베트남은 금전적 이익 공유의 범위, 즉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성된 상품의 금전적 이익의 공유는 그 상품의 매년 총 수익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또는 그 파생물의 양도로 취득된 경우, 또는 유전자원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제공자를 위한 금전적 이익 공유는 총 양도금액 또는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발생한 총소득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익 공유의 범위가 아닌 최소 비율만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비율 결정은 접근자와 제공자 간의 합의와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이로서 베트남은 그 비율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제공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up>52)</sup> 시행령 제14조 제3항.

## V. 결 론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인 시행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시행령은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국내의 개인 및 기관에게 모두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유전자원 등록 승인을 받고,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해당 지역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인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계약서와 등록승인서 사본 일체는 국가책임 기관에 제출하여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기본 절차가 끝난다.

시행령에는 금전적 이익공유의 비율을 연간 총수입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금전적 이익 공유의 범위, 즉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최종적인 비율 결정은 접근자와 제공자 간의 합의와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이로서 베트남은 그 비율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제공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생물 다양성을 이용하는 기업, 기관, 연구소, 개인 등은 아직까지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이해 부족, 법적 불확실성 및 애매한 요건 등은 생물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업계의 의욕을 상실하게(chilling effect)할 수 있다.<sup>53)</sup> 따라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베트남 유전자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7. 10. 24. 심사일 : 2017. 11. 23. 게재확정일 : 2017. 11. 24.

<sup>53)</sup> Maria Julia Oliva, Sharing the Benefits of Biodiversity: A New International Protocol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ta Med* 2011; 77(11), p. 1221.

## 참고문헌

류예리,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7.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Trade Brief, No 23, 2017.7.28.

Government, No.59/2017/ND-CP,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12 May, 2017.

Maria Julia Oliva, Sharing the Benefits of Biodiversity: A New International Protocol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ta Med* 2011; 77(11).

National Assembly, Law No.20/2008/QH12,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Law on Biodiversity, 13 November, 2008.

UNCTAD, The Interface between access and benefit-sharing rules and bio-trade in Vietnam, 2016.11.28.

## [Abstract]

## Analysis of China'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and its Implications

Ryu, Yeri

(Ph.D., Colleg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companies should obey other countries' regulations on Nagoya Protocol because sovereignty over genetic resources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ing since the Nagoya Protocol came into force in October 2014. Especially, Vietnam is a very important country as a Chinese alternative area of genetic resources, it is needed to analyse Vietnam'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and train our companies.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he Vietnam government enacted on 12 May, 2017 stipulates specific provisions of genetic resources access procedures including more than 1% sharing of monetary benefits. Decree is composed of 28 articles and annex including 9 sample forms. Hence, this paper is going to describe Vietnam's access and benefit sharing legal regime including 2008 「Biodiversity Law」 and its Decree.

**주 제 어** 나고야의정서,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법체계, 생물다양성법,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규, 유전자원, 파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Key Words** Nagoya Protocol, Vietnam ABS legal regime, Biodiversity Law, Vietnam'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derivatives,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knowledge